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강사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3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9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강사 관리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강사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빙상”을 “빙상(정규강습)”으로 하고 스포츠의 강사료(단위: 시간)란의 “25,000원”을 “40,000원”으로 하며, 빙상(정규강습)란의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스포츠	빙상(심화강습)	60,000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